

#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979
----------	------

제출연월일: 2022. 9.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제정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세입(안 제3조)

라. 세출(안 제4조)

마.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

사. 준용(안 제7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36조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계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4575호, 2022. 6. 14.)

라. 입법예고: 2022. 6. 13. ~ 7. 4.(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미래전략국장
2. 분임징수관: 지역경제과장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계장

6. 수입금출납원: 지역경제업무 담당계장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거법규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대출이자율·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향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li> <li>·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li> </ul>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울산 북구 소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본지원사업) 및 제22조(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1회)과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지출	특별지원사업	335	0	0	0	0
기본지원사업		6	6	6	6	6	30
소계(a)		341	6	6	6	6	365
수입	전력산업기반기금	341	6	6	6	6	365
	소계(b)	341	6	6	6	6	365
총비용(a-b)		0	0	0	0	0	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구비	341	6	6	6	6	365

1.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2. 협의사항: 사업계획을 다음회계년도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심의를 거쳐 확정
3. 작성자
  - 소속: 지역경제과
  - 직 급: 지방공업주사보
  - 성 명: 안진휘
  - 연락처: (052)290-3313

##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 1. 재원분담계획

구분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비	전력산업기반기금	341	6	6	6	6
합계		341	6	6	6	6	365

### 2. 재원조달방안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특별지원사업비(1회) 및 기본지원사업비(매년) 교부

### 3. 부대의견: 해당없음

### 4. 협의사항

-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후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5. 작성자

- 소 속: 지역경제과
- 직 급: 지방공업주사보
- 성 명: 안진휘
- 연락처: (052)290-3313